

## 과실범처벌의 현대적 과제 -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

### A Contemporary Issue on the Punishment of Criminal Negligence : In Regard to Corporate Crimes

이 동 명\*  
Lee, Dong-Myung

#### 목 차

- I. 서 : 문제제기
- II. 과실사고의 책임
- III. 과실범처벌의 제문제
- IV. 기업범죄처벌의 논의
- V. 결 어

####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위도페리호침몰사고·성수대교붕괴사고·대구지하철 공사장가스폭발사고·삼풍백화점붕괴사고·팜KAL기추락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또한 이른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대구지하철참사·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세월호침몰사고·판교테크노밸 리축제환풍구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들이 속출하였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의 전통적 개념은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의

논문접수일 : 2015. 06. 26.

심사완료일 : 2015. 07. 22.

게재확정일 : 2015. 08. 03.

\* 법학박사·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예방효과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하고 위험스러운 행위가 운 좋은 탈출구가 있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실범처벌의 과제는 이러한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사회나 유족의 처벌 요청을 어떻게 조정하고 과실범의 처벌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느냐에 있다.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위반, 법익침해적 결과의 발생, 결과와 주의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범에서의 과실의 개념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나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실에 대한 판단요소로서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귀속과의 관련성을 비롯한 이론의 체계적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과 위험형법의 필요성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만 귀 기울인다면 형법의 본래 의의와 취지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이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부주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과실책임, 과실범처벌, 기업범죄, 기업과실치사법, 형사책임

## Ⅰ. 서 : 문제제기

우리나라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적으로 과실범의 개념

을 밝히고 있다.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위반, 법익침해적 결과의 발생, 결과와 주의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범에서의 과실의 개념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거나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실에 대한 판단요소로서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귀속과의 관련성을 비롯한 이론의 체계적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의 전통적 개념은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의 예방효과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하고 위험스러운 행위가 운 좋은 탈출구가 있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실범처벌의 과제는 이러한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사회나 유족의 처벌 요청을 어떻게 조정하고 과실범의 처벌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느냐에 있다.

형법의 기본원리는 보호적 측면과 보장적 측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위험범은 침해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정책적이고 예외적 성격을 띤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과 위험형법의 필요성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만 귀 기울인다면 형법의 본래 의의와 취지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이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부주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실 책임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이론보다는 그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여 현대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대형사건과 사고발생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살펴보고, 과실범처벌의 방법으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선진외국의 입법과 그 도입여부 및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김재현,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법학』,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8면.

## II. 과실사고의 책임

### 1. 사회구조와 과실사고

2013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형법범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20.7% 증가하는 한편, 특별법범 중에서는 주로 과실이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을 합한 교통범죄가 특별법범 발생건수 중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과실범이 날로 증가<sup>2)</sup>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과실사고를 보면 사회구조의 변형에서 유래한 것이 많고, 과실범은 그 사회에 특유한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구조형 과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대부분의 사고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① 절차적 사고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공인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 유형은 절차들 중 한 절차의 집행자 또는 집행자들의 실수에 기인하는 사고로, 절차 자체의 잘못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② 공학적 사고로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인데, 설계자의 실수에 기인한 사고를 말한다. ③ 시스템적 사고로 이해하고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고인데,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되는 아주 복잡한 기술이나 그 운영에 필요한 복잡한 조건들이 상호 작용하여 일어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는 실수의 특징은 조그마한 실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잦은 실수 또는 실수의 연발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모순과 부패가 쌓이고 쌓이다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일어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깊이

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50면, 178면 참조.

3) 山中敬一, “現代社會における事故と過失犯”, 「東海大學法學研究」, 第三十八期, 東海大學 法律學院, 2012, 30면.

갈려 있고,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한다.<sup>4)</sup>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위도페리호침몰사고(1993. 10. 10)로 292명이 사망하였고, 성수대교붕괴사고(1994. 10. 21)로 32명이 사망하였고,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1995. 04. 28)로 101명이 사망과 삼풍백화점붕괴사고(1995. 06. 29)로 5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광KAL기추락사고(1997. 08. 05)로 22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안전평가결과는 전체 고층건물의 14.3%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고, 전체 건물의 80%은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으며, 전체 건물의 2%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이른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1999. 06. 30)로 23명 사망에 이어, 대구지하철참사(2003. 02. 18)로 192명 사망,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2014. 02. 17)로 10명 사망, 세월호침몰사고(2014. 04. 16)로 304명 사망, 판교테크노밸리축제환풍구붕괴사고(2014. 10. 17)로 27명 사상자 등 대형 사고들이 속출하였다.

## 2. 법 감정과 과실사고

현행법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의 결과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낮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

형법은 지금까지 과실범에 비해 고의범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형법적 관심의 주된 대상은 고의범 그 중에서도 고의작위범이었고, 과실범은 그 주변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실범의 증가율은 고의범죄의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고, 그 피해도 고의범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범을 통하여 형법으로나 형법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4) 박병춘,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을 보며”, 「대사연시론」, 대구사회연구소, 2014.10.13. 참조.

있다. 이와 같이 과실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위험원들을 다루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게 되면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대부분이 과실범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sup>5)</sup>

이에 따라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책임자가 과실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에 준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다수 피해자발생 사건'에 대한 적절한 양형 방안을 논의하여,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해야 할 사항, 기존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 고려사항 등 입법적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Ⅲ. 과실범처벌의 제문제

#### 1. 과실범처벌의 효과

과실범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위반에 의하여 야기된 사상(死傷)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과실범은 고의범과 같이 의도적으로 규범에 위반하여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그 처벌에서는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위자의 규범의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일반적으로 부주의한 태도를 경계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행위자 자신의 결의에 따라 개과천선한 범죄인은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등의 운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그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 업무와 무관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의지만으

5) 이용식,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 과실의 개념내용",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27면.

로 구체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고의범을 예방하기 위한 처벌은 어느 정도 유효한 마지막 수단이 되지만, 과실범에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에 대한 효과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교통정책, 법규제 등 다른 수단을 미리 행사하는 데 있다고 한다.<sup>6)</sup>

## 2. 과실범처벌의 중벌화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책임자가 과실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에 준해 처벌되도록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실범처벌은 점차 중벌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법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모든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즉효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거나,<sup>7)</sup> “현대적 위험에 대한 형법은 보통의 생활 사태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최후수단의 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우선수단의 법으로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sup>8)</sup>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sup>9)</sup>

한편으로는 오늘날 형벌규범의 강화 또는 중벌화의 원인을 위험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사회형태에서 구하려는 견해가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형사입법은 사회가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적 일탈과 범죄현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형태로 변모되어 갈 것이 예견된다고 한다.<sup>10)</sup>

6) 山中敬一, 前掲書, 8-9面 參照.

7) 류인도,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사회의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15면.

8) 최석윤, “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55면.

9) 이덕인, “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41면.

이러한 현상은 형법에서 과실범처벌의 중심은 인명피해사고에 대한 것 중에서 사망하거나 상해가 있을 때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의약품과 식품사고, 제조물과실 등 대형 사고에서는 물건의 제조와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과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의 부주의에 의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그 기업의 경영진들의 형사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1)</sup>

### 3. 과실범처벌의 위험범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인정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 하고, 보호법익이 침해되기 이전 단계, 즉 법익에 대한 위험단계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위험범이라고 한다. 이런 위험범은 주로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위치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일반적인 위험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과실범이 아닌 '추상적·구체적 위험범' 또는 '잠재적 위험범'이라는 제3의 위험범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추상적·구체적 위험성을 갖는 부주의한 관련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의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법」<sup>12)</sup>은 거래를 할 때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적합한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으로서의 물질을 과실로 생산 또는 거래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제51조 제4항), 이러한 범죄에서는 구체적 위험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법익에 대한 본질적인 위태화 또는 침해가 초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 위험범보다 가벌성의 범위가 앞당겨진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위험범의 개념은 결정적인 전제조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sup>13)</sup>

10) 이덕인, 상계논문, 35~36면 참조.

11) 山中敬一, 前掲書, 9面.

12) Lebensmittel und Bedarfsgegenstände-gesetz.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이나 특정한 위험원의 적성이라는 특별한 위험진단을 포기한다. 이러한 추상적 위험범의 특징은 결과에 대한 귀속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법익침해를 확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방적 행정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수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한다.<sup>14)</sup>

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의 구성요건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sup>15)</sup> 및 독일 형법 제316조<sup>16)</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위험범은 경험칙에 따르면 법익위태화의 결과를 야기하는 특정한 행위만을 기술하고, 장래의 위험에 대한 특별한 진단이 개별적 사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앞의 조건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은 행위인지의 여부 등에 좌우되지 않고 가벌성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위험범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법익위태화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형사제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한편으로는 이미 추상적 위험범에게 부과된 금지효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는 윤리적·종교적 금기에 공헌할 뿐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구시대의 전형적인 조종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낡고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sup>17)</sup>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 위험범은 예방적 조치에 방해가 되는 형법상의 귀속을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단순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추상적 위험범은 침해규범을 확인하여 불법에 적절히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투입됨으로써 행

13)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363면.

1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507면.

1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16) 독일 형법 제316조 “알코올음료나 기타 각성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제315조부터 제315조d까지)한 자는 제315조a 또는 제315조c에서 그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같은 조 제1항), 과실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17) 김재윤, 전제논문, 2009, 363~364면 참조.

위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행위형법의 원칙, 책임원칙 등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sup>18)</sup>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의 추상적 위험범화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자신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위험한 사태 발전의 예측에 근거하면, 즉 행위자가 스스로 계속적인 사태 진행을 통제할 수 없거나 최종적으로 보호될 법익의 특별한 중요성과 손쉬운 침해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 IV. 기업범죄처벌의 논의

### 1. 기업범죄와 과실범

기업에서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러나 비록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기업 내에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은 수직적 지배구조와 수평적 분업 체계에 따라 중간 감독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경제개발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지대하였지만, 기업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의 하나가 바로 기업범죄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거나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과되거나 조장되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20)</sup>

18) 이훈동,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31면.

19)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5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37면.

20) 박강우, “기업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안암법학」, 통권 제43호(상), 안암법학회, 2014,

현대산업사회에서 고도로 거대화된 기업조직과 분업화에 따른 경영활동 과정에서 과실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불가피하게 거론된다.

첫째는 형법에서 행위자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이행했을 때 인정되기 때문에 귀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업적 기업에서는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행위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정보의 집적이 발생하며, 그 결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태까지 초래되어 귀속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분업적인 공동 작업을 통하여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인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에 상응하여 과실범의 경우 그 각각에 대응되는 성립요건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궁극적인 문제는 입증되지 아니한 또는 타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다른 가담자들의 부담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들을 과연 전통적인 형법이론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에 있다.<sup>21)</sup>

둘째는 귀속의 문제는 입증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부주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것은 틀림없다고 말 할 수 있지만, 부주의한 행위와 관련된자들 중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해진다.<sup>22)</sup>

셋째는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지

511면.

21) 김유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구조적 문제점”,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45면.

22)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73면.

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규범충돌의 문제이다.<sup>23)</sup>

## 2. 기업범죄의 재조명

형법이론 차원에서 기업범죄와 관련한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적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 형법체계에서 영업주, 기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이른바 사업주에게 과실에 의해 법익위태화의 결과가 뒤따르는 사태를 방지하지 않은 책임, 즉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미법에서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제3자의 책임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와 이론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학자 사이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영미법에 따른 대위책임에 의한 해결방안은 그에 대한 형법이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떠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up>25)</sup>

또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

23) 김재윤, 전계논문, 2009, 353면.

24)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25) 김재윤, 전계논문, 2009, 355면.

는 업무도 포함된다.”<sup>26)</sup>고 한다.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sup>27)</sup>고 보고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도급인의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 3. 기업과실치사죄의 도입여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도 산업안전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 이후 지어진 공장들로 시설이 노후하였지만 이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위험증대가 악순환 되고 있다.

#### 가. 기업범죄의 규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민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민사적 규제는 당사자의 이해 조정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규제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는 행정규제와 형사규제인 형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그 절차와 대상 그리고 규제의 강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제는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강제되어

2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2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야 할 행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절차 역시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절차를 거쳐 법관에 의해 부과되고 검사에 의해 집행된다.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법인과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형법의 개별책임주의원칙에 의하면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기업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에게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나 보증인책임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관리감독책임과 보증인책임을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러한 처벌의 확대는 기업의 경영활동 보장이라는 측면과 모순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나. 기업과실치사법의 입법례

오늘날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자연인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기업도 범죄의 주체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는 주요 관심사이다.

(1) 영국에서는 안전보건청에서 기업과 조직의 관리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치사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1997년 노동당 정권이 입법을 약속한 후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망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의 ‘Manslaughter’는 우리나라 형법 개념으로는 ‘살인’보다는 ‘과실치사’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에서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이 아닌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이 아닌 '단체'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sup>28)</sup>

종래 동일성 이론에 따르면 경영진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알고 있어야만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의 관리체계나 운영체계가 주의의무 위반을 막을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둔다. 주의의무위반이 기업의 관리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면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조직체의 관련 주의의무란, 조직체와 관련하여 ① 사업주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② 토지의 점유자로서 토지 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③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건축 및 유지, 기타의 상업적 활동 또는 시설이나 탈 것의 사용·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④ 교도소, 경찰서, 법원, 이민관리당국, 병원 등이 신병을 억류(유치, 구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제2조).

기업과실치사법상의 주의의무는 Common Law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하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에 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참고기준이 될 것이다.<sup>29)</sup>

(2) 미국에서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1837년 New Jersey 주에서 입법된 바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New Jersey주 대법원은 1852년 한 기업을 안온방해죄(criminal nuisance)로 형사 처벌하였지만 기업은 위증죄나 살인죄의 구성요소인 주관적 요건(mens rea)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위증죄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30)</sup> 한편, New Hampshire주 법원은 1852년 State v. Gilmore 사건에서 미국 최초로 기업을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하였다.<sup>31)</sup> Gilmore 사건은 피해자가 기차에 치어 사망한

28) 정진우,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산업위생학회, 2013, 375면.

29) 이상은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참조.

30) State v. The Morris and Essex R.R., 1852 WL 3499 (Sup. Ct, 1852).

사건으로 열차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판례의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원들은 기업이 실제 기소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 Kentucky주 법원은 회사의 운전기사가 브레이크의 결함으로 트럭을 제동하지 못하여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한 Commonwealth v. Fortner LP Gas Co. 사건에서 기업에 살인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32)</sup> 1987년 Texas주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 of Texas)은 기업의 피고용인에 의해 야기된 자동차 충돌 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Texas주 형법에 따라 기업이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후 1990년대 이후까지도 미국에서 기업에 대하여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은 계속되었다. 미국 각지의 법원들은 살인죄를 비롯하여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에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Richard Knutson, Inc.사에 고용된 한 건설노동자가 굴착기의 버킷에 체인을 연결하려다 감전사한 State v. Richard Knutson, Inc.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건에서 Wisconsin주 항소법원은 기업이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Knutson사는 과실자동차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배심원단은 기소된 대로 유죄평결을 했다. 항소심에서 Knutson사는 법조항에서<sup>33)</sup> 누구든 또는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조항이 필히 사람을 언급한 것이며 이 살인죄 조항은 기업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한 후에 항소심 법원은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Knutson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인하였다.

(3)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 영국과 다른 점은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이도 기업에 대하여 살인죄(manslaughter)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에서는 영국의 동일성 원리와 같은 기업의 형사

31) State v. Gilmore, 1852 WL 2109 (Sup. Ct. 1852).

32) 610 S.W.2d 941 (Ky. Ct. App. 1980).

33) Wisconsin주의 관련법은 “whoever causes the death of another human being by the negligent operation or handling of a vehicle is guilty of a Class E felony.”(누구든 부주의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Class E 중죄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다.



책임의 인정근거에 관한 법리논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Indiana주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논의가 있었으며, Indiana주 의회에서 2006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이 발의된 바 있다.

#### 다. 기업과실치사법의 실효성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sup>34)</sup> 즉 기업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형법의 목적은 위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을 처벌하지만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며,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기업에 의한 장래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망재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낙인효과를 주게 되므로 기업이 사망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비난받을 영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처벌받을 신체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희생자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다수의 기업의 구성원들까지도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 주주와 이사 및 기타 피고용인들에게까지 처벌의 효과가 미치게 된다. 무제한의 거액의 벌금으로 인해 주주의 배당금이 줄어들고 주가는 떨어지며 해고를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벌금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기업의 추가비용을 야기하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해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다면 기업의 보험료 또한 상승하게 되며, 이 또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의 추가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4) 정진우, 전제논문, 374~383면.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이다.

#### 라. 기업과실치사법의 효과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특히 사망재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 기존의 법률보다 가중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영국의 경우 1974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액의 상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망재해를 야기한 기업의 형사 처벌문제는 기존의 안전관련 법률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해서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동일성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과실치사죄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심대한 낙인효과를 낳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실치사법은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한 경우 단순한 규제위반으로 인식되는데, 기업과실치사법의 위반은 범죄로 인식되므로 낙인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기업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망재해 발생의 예방에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업현장의 사망재해에 대해 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과 일반시민의 사망재해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여 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 할 것이다.

#### 4. 기업과실치사죄의 시사점

법 이론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더라도, 법률이 행위자 및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법인도 형벌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며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35)</sup>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 ‘과실의제설’ 등이 있으나 과실책임설이 타당하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인 법인의 임직원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으며, 법인은 임직원에게 대한 ‘고의·과실에 의한 감독의무불이행책임’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sup>36)</sup>하지만,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는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의 논의는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긍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한다. 따라서 국내의 다수설과 판례처럼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도그마틱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실제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체계에서 법인이 형사처벌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형사처벌에서 위법행위를 한 자연인을 전제하는데, 이와 달리 법인만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가능한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자연인과 별도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기업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처벌과 연계하지 않고 당해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도 가능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구성원의 형사책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며, 기업과실치사법은 바로 이러한 독립적 모델을 전제하는 것이다.<sup>37)</sup>

국내에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35) 김종구,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법학연구』, 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72면.

3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37)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7면.

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38)</sup> 근래에는 비극적인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사망재해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관련된 사망재해에 있어서도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 국내에서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주로 노동계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뿐 아니라 일반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망재해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면 새로운 입법이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주된 목적이 사망재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이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문화적 측면의 개선과 처벌요건의 완화가 주안점이라면, 특별형법 형태의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국내의 다수설과 판례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입법자의 결단으로 자연인과 연계하지 않고 법인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입법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의식을 제고하여 현대와 같은 위험사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재해와 일반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법리상의 문제점이나 기존의 안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 적용의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업과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수준을 고양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입법의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기업문화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상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sup>39)</sup>

38) 이태경,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노동과 건강』, 2012년 봄호, 노동건강연대, 2012, 참조.

39) 김종구, 전제논문, 85면.

## V. 결 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전감시체계나 위험관리체계가 취약하고,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미약하여 개선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도 대형화재사고, 대규모건축물의 붕괴사고, 식품과 의약품의 오염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이 그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에 의한 과실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개인에 의한 범죄에 비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형법적으로 중요한 관심사 되면서 그동안 형법의 주변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과실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재해를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등의 사망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법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선고형을 법정형에 근접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비극적인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사망재해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관련된 사망재해에 있어서도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이 주장되고 있다. 법률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작위의무인 안전감시체계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결국은 관리감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영국의 과실치사법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 제정

을 계기로 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정한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살인법 제정 주장은 산업재해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처벌수준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는 제정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처벌수준의 강화보다는 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기업 등 조직체의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업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재해 발생 기업 등에 대한 처벌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준·원범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08 : 한국의 신종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3.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계획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 건설공사 매뉴얼」,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 오영근, 「제3판 형법총론」, 박영사, 2014.
- 이정원, 「형법총론」, 신론사, 2014.
- 최종일, 「형법총론」, 기한재, 2013.
- 김유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구조적 문제점”,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5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 김재현,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법학」,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종구, “기업살인범과 규제 개혁”, 「법학연구」, 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 노종화·강태승, “2보 전진과 1보 후퇴 -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범에 관하여 우리는 경중”, 「공의과 인권」, 제14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4.
- 류인모,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사회의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박강우, “기업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안암법학」, 통권 제43호(상), 안암법학회, 2014.
- 박미숙,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토론문”, 한정애 국회의원실,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2013.
- 박병춘,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을 보며”, 「대사연 시론」,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2014.
- 이덕인, “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 이동명, “감독과실의 본질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55집, 한국법학회, 2014.
- 이보영, “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 이용식,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 과실의 개념내용”,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이태경, “기업살인범 다시 주목받다 :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노동과 건강」, 2012년 봄호, 노동건강연대, 2012.
-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훈동,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정진우,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 : 영국의 법인과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산업위생학

- 회, 2013.
- 최석윤, “상징 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03.
- 山中敬一, “現代社會における事故と過失犯”, 『東海大學法學研究』, 第三十八期, 東海大學 法律學院, 2012.
- 大山徹, “管理・監督過失における作爲と不作爲 : 火災事故をめぐるドイツの判例の検討を通じて”, 『香川法學』, 32卷 1號. 香川大學法學會, 2012.
- Herring, *Crimin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Keiichi Yamanaka, *Strafrechtsdogmatik in der japanischen Risikogesellschaft*, Baden-Baden : Nomos, 2008.
-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Band 2*, München: C. H. Beck, 2003.
-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71(3) *Modern Law Review* 413, 2008.

[Abstract]

## A Contemporary Issue on the Punishment of Criminal Negligence : In Regard to Corporate Crimes

Lee, Dong-Myung

*LL.D.(Dr.jur.), Professor in the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Recently, it is the subject of intense interest in criminal law that human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various disaster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have more decisive and direct effect on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an a individual crime has effect on those.

If you look at the substance of life and property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there is a considerable number of causes of the damage occurred in management of companies rather than the employee is a direct actor who induced the accident.

That is, since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does not fulfill the management oversight responsibility for the employee, those results have not a few occurred.

For social infringement appeared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of management activities as a social problem, it is not easy to advance a reasonable theory, namely a criminal oversight responsibility to the business owner, on the doctrine of traditional professional negligence. Therefore, in the new regulatory approach to social infringement shown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mpany, at the request of social demands that business owners must undertake the higher professional negligence liability, I want to raise the issue of management supervision negligence of issues have been raised in a type of professional negligence.

In conclusion, more people are becoming aware of social conflict because of various mass incident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supervisory responsibility takes the form of multiple negligence offenses. When it is accepted to substantially realize the dangerousness in the act of original directors,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observed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vention of the supervisor's mistake for the result occurrence.

**Key words** : Negligence, Criminal Negligence, Corporate Crimes, Corporate Manslaughter Act, criminal responsibility